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89
------	-----

2007. 9. 4.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년 9월 4일 상정, 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

## 가. 제안사유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2009년 5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C40 기후 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설치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장려하여 온 결과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2007년 6월말 현재 96.6%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기후변화기금'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첫째,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확대하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임.
- 둘째, 기금의 조성재원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배당금 수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 배당금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을 추가하는 것임.
- 셋째,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대상 사업은
  -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②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③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교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④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 ⑤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사업 등임.
-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는 것임.

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사업에 대한 용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호)

가. 본 조례안의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명변경과 함께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에 한정되어 있는 기금 용도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1장 총칙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하여, 「에너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에너지기본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실가스라 함은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조례안 중 기금의 용도(제5조제1호)나 용자 또는 보조대상사업(제6조제1호)에도 온실가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안 제3조(기금의 설치)~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제2장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것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가스 사업기금” 500억원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 및 주식배당금 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하고 있음.(안 제4조 관련)
- 또한, 기금의 용도를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안 제5조),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7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은 시금고(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예정이지만, 기금의 운용시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안 제7조)

라. 제3장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제12조(운영세칙)

- 안 제9조에 따르면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경우는 “기후변화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임위원회 소속보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 :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마. 제4장 보칙 : 안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제16조(시행규칙)

- 시장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이 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안 제13조), 용도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징수를 해지·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안 제14조),
- 기금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바.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 「서울친환경 에너지 선언」,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 서울유치, 「서

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발표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추진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 서울에서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토론회(3.19)」 개최를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대안과 관련 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로서의 시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준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용어정의가 누락되거나,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표현을 일부 바로잡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삽입하여 보완하고(제2조 관련), 기후변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표현을 바로잡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